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6. 21(월)
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6. 7
- 나. 제안자 : 김소림 의원 외 4인
- 다. 회부일자 : 2010. 6. 7
- 라. 상정일자 : 2010. 6. 15(제18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 - 제안설명 : 김소림 의원
 - 검토보고 :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종진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 개정으로 '10. 7. 1부터 시의회내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
-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직원은 교육감이 임명함에 따라 『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』에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정원을 포함한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「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및 「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 조례안은 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 개정으로 ‘10. 7. 1부터 시의회내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
-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직원은 교육감이 임명함에 따라 안 제5조의 “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「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및 「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”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해당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이상철, 김소림, 박희경, 배영민, 허식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 : 5명)

7. 기 타

-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「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및 「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원은 「인천광역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원은 「인천광역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」 및 「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로 정한다.</p>